



### 사업장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1) 당사는 신발을 제조·수출하는 업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2,900명인 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 수 및 자격기준은

(2) 인접지역에 각기 번지가 다른 3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른데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 재봉공장 인원수 268명, 완제공장 인원수 1,800명, 준비공장 인원수 400명

(3)300인미만인 재봉공장의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2,00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신발제조업은 동법시행령 별표6의 보건관리자 자격을 지닌자 2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중 의사 또는 간호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함.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97.6.11)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수 및 선임방법이 변경됨

(2)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이하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가 300인 이내인 경우 공동으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97.4.10) 제36조) 귀 사의 경우는 3개 공장의

상시근로자수 합계가 2,900명이므로 3개공장에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

- 동 질의서에 제시된 사업장이 신발제조업이라면 재봉공장 및 준비공장의 경우는 1인의 보건관리자를, 완제공장의 경우는 2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자격은 동법시행령 별표6의 자격을 지닌 자이어야 함. 다만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 지방노동관서의 현지출장 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3)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상한선이 폐지되어 모든 사업장이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97.4.10) 제40조(안전관리자 등의 외부 위탁)의 규정에 따라 모든 규모의 사업장은 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안전관리자의 증원·개임명령 해당 사유



A사(제조업)의 사업장내에서 B사(건설업)의 소속직원이 시설물 공장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동 재해가 A사에 대한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개임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A사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안전상의 조치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



다면 동 재해는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개입명령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재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산업위생관리기사가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위생관리기사인 보건관리자가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보건관리자는 그 자격의 종류에 불구하고 동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의 직무를 행할 수 있음.

**APT 신축공사의 갱폼공법 사용시 낙하물 방지망 설치 여부**



아파트 신축시 수평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이 10m 이내마다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사용하고 있는 갱폼 사용시 수평낙하물방지망 설치를 생략하는 것이 적법한지



낙하물방지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

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나,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레할 위험이 있는 때에 설치하는 방호철망이나 안전망, 방망 등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공법에 그 설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공사도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인지**



노동부 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조항 및 제6조 제2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한 건설공사까지 포함됨을 말하는 것인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일괄적용 포함)에만 적용되며, 동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가입(임의가입)한 건설공사는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됨.

관련 고시 제97-4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98.1.1부터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



**1개 공사를 단위 공사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건설공사 발주자가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건설업의 종류로 분류된 일반 건설(갑), (을) 등에 의한 계상기준표 적용이 아니고 1개 공사를 토목, 건축, 기계설치, 전기공사로 세분화하여,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적용, 표준안전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적게 지급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공사종류 및 계상 기준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제5조 제2항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 종류 예시에 의하는 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 지는 경우(시공회사가 다른 경우는 제외)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1개 공사를 세분화시켜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를 표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공사현장의 여건상 인근지역의 의료 시설이 빈약하고 도로 및 교통사정이 열악하며, 현장내 응급처치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하며, 공사계약 조건에서 동 응급처치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 같은 이유로 당 현장에 의무실을 설치할 경우 의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귀 현장의 경우 의료시설 구입비와 간호사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중 건강진단비와 구급기재 등에 총액의 1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간호사 및 전문의료시설 등에는 지출할 수 없다고 사료됨.

**안전보건행사중 포상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도급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업체에 일정비율의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금액에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 원도급 업체로서 당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증진을 목적으로 적정기간 정기적으로 우수 하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우수 근로자를 선정하여 원도급업체 안전관리비에서 포상비(포상품)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적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포상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제8조 제1항 별표2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항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업체가 안전관리 우수 하도급업체 및 우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본사 업무연락(공문)을 안전관리비 정상 증빙서류로 대체 · 사용할 수 있는지**



본사 안전팀에서 전사적 재해예방활동 일환으로 안전홍보물 및 안전용품을 일괄 제작하여 업무연락으로 공지한 후 현장에 배포 사용할 경우 각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처리시 본사에서 전산처리에 의한 원가이체로 현장별로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처리시 본사에서 전산처리에 의한 원가이체로 현장별로 안전관리비 투자를 하고 본사에서 전 현장에 영수증을 배포 증빙처리를 하고 있음. 이런 번거로움을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영수증대신 본사 안전팀 업무연락(공문)을 증빙서류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단위 건설사업장(현장)별로 계산 · 사용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단위 사업장별로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물품의 실제 구입 · 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본사의 업무연락(공문)을 증빙서류로 대체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시 교통사고도 포함되는지**



건설현장에서 공사수행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처리된 경우 재해율 분석시 포함을 시키는지 여부



단순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질병 사망자에 있어서는 각 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 회부 그 의견을 수렴하여 동 재해율 산정의 포함여부를 확정함

**건강진단결과보고를 병원의 검진확인서로 대체가능 여부**



건강진단결과보고 사항을 일반건강진단에 상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병원확인서(개인결과표는 근로자측에서 반대)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대치 가능여부



산안법시행규칙('97.10.16) 제105조 개정으로 '98.1.1이후 실시분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보고 의무 면제